



즉시 사용

비고	<p>* 국무총리 모두말씀 : 회의 직후 별도 배포 # 공동배포 : 국토부, 고용부, 복지부, 행안부</p>		
담당	<총괄>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	과장 서영석, 서기관 조상언 (044-200-2056, 2057)	
	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안전대책	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과장 김윤혜, 사무관 유주연 (044-200-2375, 2376)	
		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과장 이병훈, 사무관 조태영 (044-201-3538, 3542)	
		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과장 황종철, 사무관 신백우 (044-202-7722, 7743)	
	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지원 및 자연 재난 대책	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과장 김달원, 사무관 손호진 (044-200-2287, 2289)	
		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과장 황승현, 사무관 전하윤 (044-202-3020, 3009)	
		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 과장 임재웅, 사무관 안홍환 (044-205-5230, 5237)	

타워크레인 6,074대 전수검사, 20년 이상 노후장비 사용제한

- ▶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, 설치·해체 국가기술자격제도 도입
- ▶ 검사기관 평가제도 도입, 부실 검사기관 퇴출 등 안전성 검사 강화
- ▶ 독거노인, 위기아동 등 복지사각지대(37만명 목표, 전년대비 10%↑) 발굴
- ▶ 빅데이터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재난대책 시행

-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16일(목) 오전,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(약칭 '현안조정회의')를 주재했습니다.
-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'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안전대책'과 '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·지원 및 자연재난 대책'을 심의·확정했습니다.
- * 참석자 : 총리(주재), 과기정통부·행안부·농식품부·산업부·복지부·고용부·국토부·해수부·중기부 장·차관, 금융위원장, 국조실장, 소방청장 등

◆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(국토부·고용부)

- 정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^{*}를 예방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 등록에서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리를 철저히 하고, 원청, 임대업체, 설치·해체업체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.

* ('13) 5건(사망 6, 부상 3) → ('14) 5건(사망 5, 부상 3) → ('15) 1건(사망 1)
→ ('16) 9건(사망 10, 부상 1) → ('17.10월) 4건(사망 13, 부상 29)

-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20년 이상 노후된 타워크레인은 사용을 제한하겠습니다.

- 연식에 비례하여 안전성 검사^{*}를 강화하고, 20년 이상 노후된 타워크레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되, 세부 정밀진단^{**}을 통과한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(3년 단위) 사용을 연장하겠습니다.

* (10년미만) 정기검사 → (10년이상) 주요부위 정밀검사 → (15년이상) 비파괴검사

** 주요부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해하여 장비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

② 전국에 있는 타워크레인 6,074대를 전수조사('17.11~'18.4) 하겠습니다.

- 허위등록 적발시 등록말소 등 엄정 조치하고, 노후부품 사용 등 안전성 점검도 병행하여 장비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.
- 앞으로, 수입크레인 등록^{*} 시 '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' 제출을 의무화 하여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.

* 현재는 수입사실 증명서류를 통해 연식 확인, 연식을 허위신고할 경우 검증에 한계

③ 부품인증제를 도입하여 불량부품 사용을 억제하겠습니다.

- 사고가 잣고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주요부품(텔레스코픽 실린더 등)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하여 非인증부품의 사용을 원천 배제하고, 볼트, 핀 등의 부품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설정하겠습니다.

④ 부실 검사기관 퇴출 등 안전성 검사를 내실화 하겠습니다.

- 검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하여, 부실검사 적발시 영업정지(1회 적발), 취소처분(2회), 퇴출(재등록 제한) 등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.

⑤ 원청, 임대업체, 설치·해체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.

- (원청건설사) 타워크레인 설치·해체·상승 작업시 원청이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하여, △작업자 자격 확인 △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△충돌방지 등 안전장치 설치 △전담신호수 배치 등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.
 - (임대업체) 단순히 장비를 빌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장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등 정보를 원청과 설치·해체업체에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.
 - (설치·해체업체) 업종등록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설치해체업체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여 적정 자격을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, 작업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제도(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)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.
- 정부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는 한편,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습니다.

◆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·지원 및 자연재난 대책 (복지부·행안부)

- 정부는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보호하고, 폭설과 한파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국민피해와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.
- 분야별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<복지사각지대 발굴·지원>

- ① 단전·단수 등 27종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독거노인·위기아동 등 복지사각지대*를 집중 발굴 하겠습니다.

* 37만 가구 발굴 목표(전년대비 10%↑, 집중발굴기간 : '17.11.20~'18.2.28)

- 특히, 의료위기·경제적위기에 놓인 고위험 가구 14만명(1인가구 2만명 포함)에 대해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, 장기결석, 건강검진 미실시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겠습니다.

- ②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.

- 지원대상 선정시 '主소득자' 뿐만 아니라, '副소득자'의 위기사유 (휴·폐업, 실직 등)도 포함하고, 지원금액도 인상*하기로 했습니다.

* △ 생계지원: 4인 기준 ('17)115.7만원 → ('18)117만원 △ 주거지원: 대도시 3~4인 가구 63.6만원 → 64.3만원 △ 연료비지원: 월 9.5만원 → 9.6만원 등

- ③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·위기아동·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.

- 독거노인 24만명에 대해서는 폭설·한파시 생활관리사들(9,200여명)이 일일 안전확인을 실시하고, 경로당 6만5천여개소에 대해서는 5개월간('17.11~'18.3) 난방비를 월30만원씩 지원합니다.

- 위기아동에 대해서는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·지원하는 한편, 방학 중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.

- 노숙인들이 거리에 방치되지 않도록 위기대응팀을 운영하여 의료, 응급잠자리 등을 지원하고, 쪽방 안전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.
 - * 노숙인, 쪽방거주자 현황('16.12) : 노숙인 10,645명, 쪽방거주자 6,053명
- 한편,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* 지원을 2개월 연장(12~4월 → 11~5월)하기로 했습니다.
 - * 대상: 생계급여 수급자(중위소득 30%이하) 또는 의료급여(중위소득 40%이하) 수급자이며 가구원중 노인·영유아·장애인·임산부를 1인이상 포함한 경우
- ④ 사랑의 연탄배달, 반찬 나눔 등 연말연시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, 사회복지공동모금회, 사회적기업, 민간기관 등 민간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소외계층 발굴과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

<자연재난 대응>

- ① 폭설·한파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4개월간('17.11.15 ~ '18.3.15) 비상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.
-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하고, CCTV와 SNS를 활용* 하여 실시간 재난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
 - * CCTV 확대('16: 3,189대 → '17: 10,499대), 재난연구원이 개발한 SBB(Social Big Board) 활용 SNS 모니터링 실시
- 또한, 재난 발생시 재난관리책임기관 상호간 장비와 인력을 신속 지원하는 긴급지원체계*를 구축하고, 민·관·군 협력**도 강화하겠습니다.
 - * 재난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해 기관별 보유 자원을 공유하고, 재난 발생시 현장에 신속 투입·지원 : 응원요청(요청기관) → 승인(승인기관) → 배정
 - ** 284개 軍부대, 건설기계협회 등 321개 민간단체와 지자체간 협약체결
- ② 사전대비를 강화하여 인명·재산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.

- 한파 대비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, 인명사고가 많은 폭설 취약시설을 사전에 정비하고, 비닐하우스 붕괴 등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·축·수산시설^{*}(33만개)에 대한 전문가 점검 등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

* 비닐하우스(19만), 인삼재배시설(1.7만), 축산시설(11만), 수산시설(0.5만) 등, 최근 10년간 겨울철 재산피해 중 61.9%가 농·축·수산시설물 피해

③ 지역 맞춤형 제설대책 추진으로 교통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.

- 강설량, 강설시간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제설물자를 사전 확보하고, 사고위험이 높은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^{*}합니다.

* CCTV, 자동제설·제빙장치 설치 확대, 고갯길·IC 등에 견인차·제설차량 상시 배치 등

- 또한, 교통정체·고립 등에 대비한 대중교통 증편 운행 등 교통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.

④ 평창, 강릉지역 폭설에 대비하여 범정부 폭설 안전대책 TF(행안부, 국토부, 조직위 등 17개 기관)를 운영하여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

- 의료·인력·장비·통신·구조·구호 등 올림픽 재난·사고 대비 총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, 올림픽 수송로(올림픽 경기장과 숙박시설간 연결노선 587.5km) 제설대책^{*}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* (제설물자) 장비 1,025대, 제설제 15만톤, 제설창고·대기소 등 49개소 확보 (취약구간) 자동제설장치 49개소, CCTV 146개소, 안전순찰대, 전담제설차량 배치 등

- 정부는 겨울이 되면 더욱 어려워지는 분들에 대한 돌봄을 촘촘히 하고, 예상되는 자연재난에 빈틈없이 대비하여 국민들께서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※ (붙임) 1. 타워크레인 대책 세부과제별 이행계획
2. 겨울철 대책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

불임1

타워크레인 대책 세부과제별 이행계획

◇ 법령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대책 발표 후 바로 현장 시행, 법령 개정 사항도 즉시 개정 절차 착수

구분	과제명	이행계획	이행시기	부처
설비 안전성 관리 강화	▪ 10년 이상 크레인 특정부품 검사	▪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	'18.3 완료	국토부
	▪ 15년 이상 크레인 비파괴검사	▪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	'18.3 완료	국토부
	▪ 20년 이상 크레인 연식제한 등	▪ 건설기계관리법 개정	'18.6 제출	국토부
	▪ 기 등록크레인 전수검사	▪ 연식실태 조사계획 수립·실시 ▪ 노후부품 등 안정성 검사 실시	'17.11~'18.1월 '17.11~'18.4월	국토부
	▪ 신규 크레인 허위등록 근절	▪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	'18.3 완료	국토부
	▪ 주요부품 인증제 도입	▪ 건설기계관리법 개정	'18.6 제출	국토부
	▪ 중요부품 내구연한 규정	▪ 건설기계관리법 개정	'18.6 제출	국토부
	▪ 검사기관 암행점검	▪ 검사기관 부설검사 여부 암행점검	'17.11~12월	국토부
	▪ 검사기관 평가제도 도입	▪ 건설기계관리법 개정	'18.6 제출	국토부
	▪ 검사 총괄기관 공공기관 지정	▪ 건설기계관리법 개정	'18.6 제출	국토부
	▪ 검사기관 제재방안 마련	▪ 건설기계관리법 개정	'18.6 제출	국토부
	▪ 검사내용 확대 등 검사 내실화	▪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	'18.3 완료	국토부
작업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	▪ 원청의 작업관리 책임 의무화	▪ 산업안전보건법 개정	국회계류중	고용부
	▪ 전담신호수 배치 및 교육 실시	▪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	'18.3 완료	고용부
	▪ 충돌방지 등 안전장치 의무화	▪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	'18.3 완료	고용부
	▪ 적격 임대업체 선정시 발주자 검토·승인 방안 검토	▪ 건설산업기본법 개정	'18.6 제출	국토부
	▪ 서면정보제공 및 협동 안전검검	▪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	'18.3 완료	고용부
	▪ 영상장치 설치 및 기록제출	▪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	'18.3 완료	국토부
	▪ 설치·해체업체 등록제 도입	▪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	'18.3 완료	고용부
	▪ 설치·해체 전문자격제도 도입	▪ 산업안전보건법	'18.3 제출	고용부
		▪ 설치·해체 국가기술자격 종목개발	'18.6 완료	고용부
안전관리 역량 및 사고발생 시 제재 강화	▪ 설치·해체작업자 및 조종사 교육과정 개편	▪ 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제한 규칙 개정 ▪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	'18.3 완료	고용부 국토부
	▪ 안전관리 계획 사전검토 개선	▪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	'18.3 완료	국토부
	▪ 작업중지권 강화	▪ 산업안전보건법 개정	'18.3 제출	고용부
	▪ 원청 사망사고 발생시 처벌 강화 및 입찰자격 제한	▪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▪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	'18.3 제출	고용부 국토부
	▪ 임대업체 사망사고 발생시 제재강화	▪ 건설기계관리법	'18.6 제출	국토부
	▪ 조종사면허 취소 및 설치·해체 작업자의 취업제한	▪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▪ 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제한 규칙 개정	'18.3 완료	국토부 고용부
현장 지도 감독 강화	▪ 설비 및 작업안전성에 대한 업체 자체관리 유도	▪ 건설업체(1,000위) 자체관리 강화 ▪ 임대업체 안전점검 자체실시 안내	'17.11월	고용부 국토부
	▪ 타워크레인 특별교육	▪ 설치·해체작업자 특별교육 실시	'17.12월	고용부
	▪ 타워크레인 불시감독	▪ 타워크레인 다수 사용현장 불시감독	'17.11~12월	고용부

불임2

겨울철 대책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

<복지사각지대 발굴·지원>

구 분	2016년	2017년	비 고
발굴대상	고위험가구 ▪ 12만명	▪ 14만명(1인가구 2만명 포함) * Big Data 활용, 복지부명단 추출	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
	위기아동	▪ 위기아동예측시스템 시범운영 (활동정보 9종, '17.11~'18.1) ▪ 발굴된 아동은 읍면동 연계, 공무원 가정방문 확인	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
	기초생활 보장제도	▪ 기존 기초생활보장 탈락자 중 신규수급 가능대상자 6.4천명 ▪ 차상위계층 중 노인·장애인인 부양가구 92천명	노노, 장장 부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	긴급복지 지원	▪ '주소득자 외에 부소득자 휴폐업·실직 ▪ 사업장 화재 등 실질적 영업 곤란 ▪ 단전 시 1개월 경과 → 즉시	위기사유 확대
생계지원	긴급복지 지원 ▪ 연료비 ('17년) 월 95천원 ▪ 긴급 생계비 ('17년) 115.7만원(4인가구) ▪ 긴급주거비 ('17년) 63.6만원(대도시 4인가구)	▪ 연료비 ('18년) 월 96천원 ▪ 긴급 생계비 ('18년) 117만원(4인가구) ▪ 긴급주거비 ('18년) 64.3만원(대도시 4인가구)	지원금 인상
	기초생활 보장제도 ▪ 기준중위소득 ('17년) 447만원(4인가구) ▪ 생계급여 ('17년) 1,340천원(4인가구) ▪ 주거급여 ('17년) 31.5만원(대도시 4인가구)	▪ 기준중위소득 ('18년) 452만원(4인가구) ▪ 생계급여 ('18년) 1,356천원(4인가구) ▪ 주거급여 ('18년) 33.5만원(대도시 4인가구)	지원금 인상
	에너지 바우처 ▪ 시행기간 : 12~4월	▪ 시행기간 : 11~5월	2개월 연장
일자리 지원 (자활근로)	-	▪ 취업 성공패키지 탈락자에 대해 자활근로 연계 의무화	
	-	▪ 고위험 1인가구 등 위기가구	읍면동 주민센터
민간자원 확대	우리함께 행복나눔기금 ▪ 희망2017나눔캠페인 3,915억원 모금	▪ '우리함께 행복나눔' 기금 복지 소외계층 지원	사회복지 협의회
	공동모금회 모금	▪ 희망2018나눔캠페인 3,990억원 모금 목표	사회복지 공동모금회

<자연재난 대응>

구 분	2016년	2017년	비 고
사전대비 기간	▪ 45일(10.1~11.14)	▪ 55일(9.20~11.14)	10일 ↑
지자체 조례	▪ 41개 지자체 개정(17.9%) * 건축물 제설·제빙 조례에 지붕제설 포함	▪ 157개 지자체 개정(68.5%) * '17.11.2일 기준	'18년 완료
인센티브	-	▪ 우수 지자체 개정 인센티브 부여	
모니터링	▪ CCTV 1개 시스템(3,189) * 행안부 재난영상정보시스템	▪ CCTV 4개 시스템(10,499) * 국토부(1,178), 경찰청(3,183), 도로공사(2,049) ▪ SNS 모니터링 추가 실시	6,410대 ↑
산간(도로) 통제 기준	▪ 노면적설량	▪ 노면적설량 + 시간당 강설강도	폭설 대비
사례 분석	▪ 전년 피해사례 분석	▪ 30년 피해 유형화, 사례집 발간 ▪ 재난 언론보도 분석	
위험시설 관리 *PEB 건물 등	▪ 단순 숫자 관리	▪ 숫자 + 위험요인 관리 * 사용용도, 준공연도, 기둥간 거리, 시설상태	
제설물자 확보 기준	▪ 점증방식 (장비 39,638대, 제설제 776천톤) * 예) 제설장비·제설제 전년대비 100%이상 확보	▪ 지역 맞춤방식 (장비 38,385대, 제설제 737천톤) * 지역별 강설유형, 도시유형에 따라 확보	
취약구간	▪ 단순 숫자 관리	▪ 숫자 + 위험요인 관리 * 적설량, 최저기온, 경사도, 회전반경, 교통량, 사고이력 등	
동계올림픽 대비	-	▪ 폭설 안전대책 등 지원 체계 마련	